

대한파크골프협회

계약직(육아휴직 대체인력) 공개채용

대한파크골프협회(KOREAPARKGOLFASSOCIATION)는 대한민국 파크골프 종목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.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.

1 채용분야

채용직급	채용분야	채용인원	주요업무
계약직 (육아휴직 대체인력)	사무행정	1명	○ 협회 사무행정 ○ 대회 업무 지원 ○ 회원관리 및 지도자 자격검정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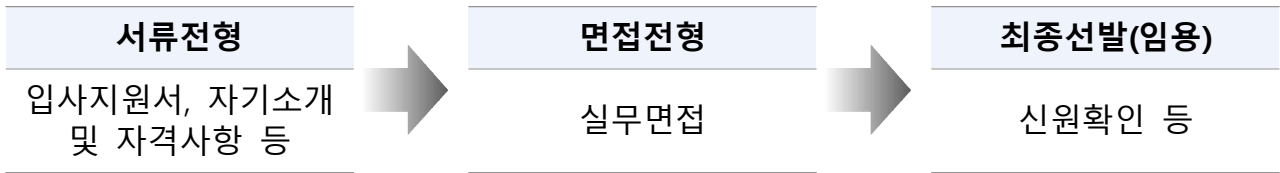
2 근무형태 및 조건

채용분야	근무신분	근무시간	근무지	근로계약기간	월 보수(세전)
사무행정	기간제 근로자	상시근무자, 주 5일(월~금), 1일 8시간 (08:00~17:00)	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, 올림픽회관 207호	26.10.1.~28.4.28. (1년 7개월)	2,500,000원

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

구분	주요내용
공통사항	자격요건 ○ 대한파크골프협회 인사규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. * 단,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(만60세) 이상자는 제외 ○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,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* 단,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가능 ○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(대회 지원 시 국내외 출장 가능자) ○ 채용 즉시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(2026.10.1., 서울 송파구) ○ 2종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
	우대사항 ○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(서류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) ○ 체육단체에서 재직 경력이 있는 자(1년 이상) ○ 체육 관련 전공자 ○ 컴퓨터 활용능력(엑셀, 한글 등) 자격증 소지자

4 전형절차



가. 채용일정 * 일정은 사무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구분	추진일정
서류전형 (원서접수)	2026.8.18.(화) ~ 2026.9.6.(일) [합격자발표: 2026.9.10(목)]
면접전형	2026.9.18.(금) ※ 제출서류 확인하여 지참 [합격자발표: 2026.9.22.(화)]
근무시작일	2026.10.1.(목)

나. 전형별 주요내용(채용방법: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경쟁)

구분	주요내용	합격배수						
① 공통(유의사항)								
-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 - 면접 시, 지원서에 작성한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서류 누락 또는 미 제출 시 응시 제한될 수 있음.								
② 전형별 평가방법								
서류전형	(선발인원) 5명 *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(평가기준) 자격요건, 경력, 자격증, 자기소개 등 평가	5배수						
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주요내용</th></tr><tr><td>자격요건 확인</td><td> - 필수 자격 충족여부 확인 -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 </td></tr><tr><td>가점요소 평가</td><td> -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-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(증빙서류는 면접 시 제출) </td></tr></table>		구분	주요내용	자격요건 확인	- 필수 자격 충족여부 확인 -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	가점요소 평가	-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-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(증빙서류는 면접 시 제출)
	구분		주요내용					
자격요건 확인	- 필수 자격 충족여부 확인 -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							
가점요소 평가	-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-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(증빙서류는 면접 시 제출)							

구분	주요내용	합격배수
면접전형	• (일시/장소) 2026.9.18.(금)/ 서울 송파구 대한파크골프협회 *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• (평가기준) 직업윤리관, 체육상식, 적극성, 성실성, 경력 및 경험 • (평가방법) 면접위원별 5개 항목 평가(총점 100점 만점)	1배수
최종합격	• (선발기준) 합격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- 동점자 발생 시, 취업지원대상자 → 장애인 → 다음 각 평가항목 고득점자순(성실성 → 적극성 → 직업윤리관 → 체육상식 → 경력 및 경험)으로 결정함. • (최종확정) 지원 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확정	-

다. 전형단계별 가점대상(최대 10점 반영)

유형	가점대상	전형단계		우대사항	적용기준	관련근거
		서류	면접			
법정	취업지원대상자 (보훈대상자)	✓	✓	5점	• 국가보훈처 발급점수에 따라 전형별 5점 또는 10점 부여 ¹⁾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해당하는 자
정부 권장 정책	청년 (만15~34세)	✓		3점	•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해당하는 청년(서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)	청년고용촉진특별법
경력	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재직 경력자	✓		3점	• 체육단체에서 재직 경력이 있는 자(1년 이상)	
	체육 관련 전공	✓		2점	• 체육 관련 전공자로 체육, 스포츠, 체육종목 전공이 들어가야 인정	
자격	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	✓		2점	• 컴퓨터 활용능력(엑셀, 한글 등) 자격증 소지자	

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 관련,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(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 적용). 다만, 동법 제31조 제3항 단서 관련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

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제출시기	제출서류	제출방법	용도
------	------	------	----

① 공통(유의사항)

- 원서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
- 수신시간 이후 추가 접수 절대불가(송신시간 기준이 아니므로, 제출에 문제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 요망)
-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은 증빙서류 모두 제출
-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
② 제출서류 및 방법

원서접수 [8.18.(화) ~ 9.6.(일)]	○ 입사지원서(대한대한파크골프협회 양식) ※ 메일 및 입사지원서 제목 - 대한파크골프협회 입사지원(성명)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○ 담당자 이메일로 9.6.(일) 18:00 까지 제출 - kpga@sports.or.kr	입사지원
면접당일 [9.18.(금)]	○ 신분증 지참 *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발행 신분증만 인정 ○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/경력 증빙서류 일체	○ 원본제시 ○ 사본제출	입사지원 확인용 동점자 처리 확인용 결격사유 확인용
합격자 발표 후	해당자 ○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○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○ 최종학력증명서 ○ 경력증명서 ○ 사진(명함판 상반신 탈모) ○ 채용신체검사서 * 단,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.	○ 원본제출	

< 경력 관련 유의사항 >

- 경력(재직)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,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, 회사 직인(또는 인감)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(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)
- 수기로 기재된 '경력(재직)증명서'는 불인정
- '경력(재직)증명서'외 서류(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)는 불인정
- 지원서에는 경력(재직)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 함.
- 재직 중인 경우, 근무기간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재

6

채용서류 반환

(온라인 제출서류 제외) *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

구분	주요업무
응시자 반환 청구기간 (원본서류만 해당)	○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
반환 방법	○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(비용 대한파크골프협회 부담)

7

유의사항
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,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기 바라며,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경력의 계산, 자격증, 교육사항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채용전형 중 제출한 서류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

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.(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) 이에,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(kpgakpga7330@naver.com)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청구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.

-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파크골프협회 홈페이지(www.kpga7330.com)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.

8 문의 및 연락처: 대한파크골프협회(☎02-2135-7811)

2026.8.18.(화)



(사)대한파크골프협회
KOREA PARKGOLF ASSOCIATION

대한파크골프협회 인사규정 제19조(임용 결격사유)

제19조(임용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6. 본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0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
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 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 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